

공익을 저버린 그날에 대한 고백

시사저널

공성윤 기자



“취재를 너무 열심히 하면 기사를 못 쓴다.”

기자를 준비하던 시절, 한 중앙 일간지 칼럼에서 읽은 글귀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측의 입장을 똑같이 듣다 보면 모두가 그럴듯한 얘기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나중에 기자가 됐다. 쓴 기사를 반추해볼 새도 없이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 과정에서 취재를 꼼꼼히 해야 기사의 근거가 탄탄해진다 건 확실히 배웠다. 열심히 취재했는데 못 쓸 기사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 전까지는.

정확히 2015년 12월 27일이었다. 이날 서울에서 차를 몰아 충남 논산의 어느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성범죄자 박홍균 씨(31·가명)가 산다는 곳이었다. 그는 2011년 5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고려대 의대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3명 중 한 명이었다. 당시 만취 상태의 동기 여학생을 추행하고 사진을 찍은 혐의로 홍균 씨는 가장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예비 의료인의 윤리 의식과 맞물려 큰 파장을 빚었다.

불현듯 궁금했다. ‘지금은 출소했을

텐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와 같은 호기심이 내가 홍균 씨 집을 찾게 된 계기였다. 집 주소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확인했다.

그곳은 인기척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그러다 길가에 묶여있던 개 한 마리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마을의 모든 개가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했다. 한겨울이었는데도 식은땀이 흐를 만큼 당황했다. 발걸음을 재촉했다.

홍균 씨의 거주지로 알려진 곳은 마을 비탈길 맨 위에 있었다. 100평 남짓한 마당에 일 층짜리 건물 두 채가 있었다. 마당에 있던 백구 두 마리는 내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부터 짖어댔던 것 같았다.

그래도 여전히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조차 굳게 걸어 잠겨 있었다. 우편함을 열어봤다. 각종 광고 전단지와 함께 주민세 고지서가 들어 있었다. 수신인 이름은 ‘박○○’. 홍균 씨의 아버지 이름이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일단 홍균 씨 가족이 집에 들어오기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순간 이웃집에서 한 아주머니가 나왔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기자입니다. 윗집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2018년 9월 촬영된 박홍균 씨 집 전경. © 네이버 캡처

“그 집에 대해선 우리 남편이 잘 아는 데.”

“그럼 혹시 윗집 가족 중 한 명의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들어오세요.”

아주머니 내외는 스스럼없이 나를 맞아줬다. 윗집은 예상했던 대로 홍균 씨 가족의 집이었다. 아주머니 남편 이모 씨는 “홍균 씨 가족은 이곳에 온 지 1년 정도 됐다”며 “가끔 그쪽 가족과 함께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했다. 잠시 뜬금없이 뒤에 물었다. “홍균 씨가 성범죄자였단 걸 알고 계십니까.” 이 씨는 덤덤하게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여학생이 살고 있는 이웃집에 공문이 날아왔다고 하더군요. 동네에 성범죄 전과자가 살고 있다고. 우리 집엔 딸이 없어서인지 공문이 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는 있었죠.”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자

박홍균 씨 아버지 앞으로 발송된 주민세 고지서. © 공성윤



신상정보는 그가 거주하는 구역에 같이 살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부모에게 우편으로 전달된다. 이 씨는 “홍균 씨가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며 “예의도 바르고 인사도 잘 하는 학생”이라고 했다. 이 씨의 부인은 “그렇게 똑똑한 학생이 이런 일에 휘말리다니 안타깝다”며 혀를 찼다.

홍균 씨를 만날 수 있을지 물어봤다. 이 씨는 “서울에서 자취하는 걸로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집에 내려온다”고 답했다. 사실이라면 이것만으로도 기삿감이란 생각이 들었다. 실제 거주지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지된 주소가 달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할 경찰서는 홍균 씨의 소재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변경 시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어긴 셈이다. 나아가 경찰의 직무유기까지 지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흘 뒤인 2015년 12월 31일, 경기도의 S병원을 찾았다.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A씨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A씨는 짐짓 놀란 눈치였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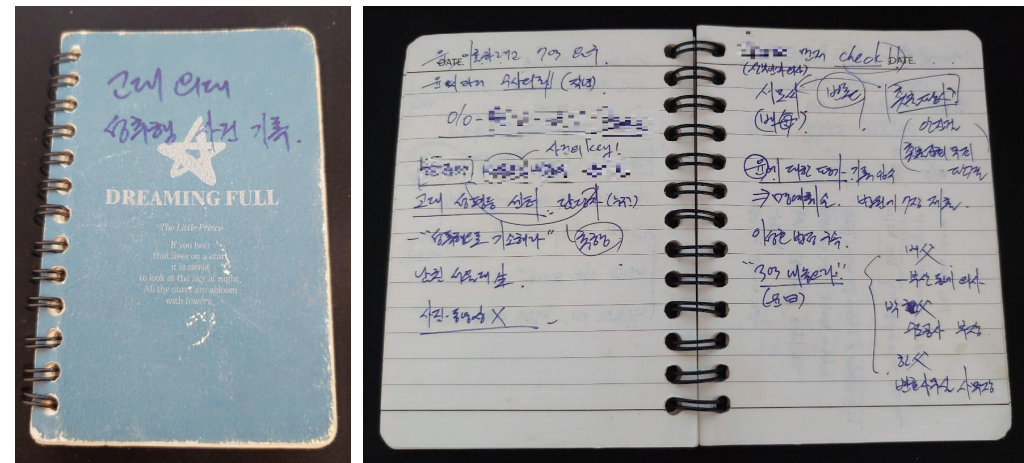
그때 A씨를 통해 홍균 씨의 근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홍균 씨가 출소한 뒤에 수능을 다시 쳐서 성균관대 의대에 합격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따로 취재해본 결과 이는 사실이었다. 홍균 씨는 당시 성대 의대에 재학 중이었다. 충격적이었다. 성범죄 전과자가 예비 의료인이란 사실은 적잖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했다.

시간이 흘렀다. 2016년 4월 7일, 홍균 씨의 성균관대 의대 재학 사실은 동아일보에 의해 처음 알려졌다. 해당 기사의 온라인 제목은 ‘[단독]성범죄자도 의사 될 수 있다나...’였다. 이는 단독 보도가 맞다. 홍균 씨 이웃 이 씨와 피해자 A씨를 통해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도 기사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다.

나는 홍균 씨 집을 찾아갔을 때 그의 아버지와 잠깐 통화한 적이 있다. 당시 이 씨의 휴대폰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홍균 씨 아버지의 목소리가 열게 떨렸던 걸로 기억한다. 그는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외쳤다.

“돌아가세요.”

“네?”



취재 당시 취재과정을 기록해둔 수첩. © 공성운

“가시라고. 당신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찾아와?”

“아버님 진정하시고요. 아드님에 대해서...”

“됐고! 쫓값 다 치른 애를 또 끄집어내서 뭐 어찌겠단 말이야? 당신 기자들이란 사람들 말이야, 응? 그렇게 남의 상처를 함부로 건드려도 되나? 이제 겨우 잊혀져 가는데, 2년 넘게 옥살이한 애를 또 괴롭히려 온 거야? 당장 돌아가시오! 더 할 말 없습니다.”

통화는 그걸로 끝이었다. 당황스럽진 않았다. 대신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날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홍균 씨 아버지의 목

소리가 생각났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홍균 씨에 대한 기사화를 원치 않는 사람은 또 있었다. A씨였다. 말실수라도 할까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심경을 꼭 듣고 싶었다. A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병원 비상계단으로 나를 불러냈다. 그가 말했다. 조곤조곤한데도 희한하게 주눅을 들게 하는 목소리였다.

“그때 사건을 잊기 위해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도대체 날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날의 사건에 대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기사는 절대 적지 마세요. 누군가가 저를 음해하는 얘기라도 담겨 있다면 명

예횡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실제 사건 관련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끝난 일입니다. 가해자들도 짓값을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절 찾아오지 마세요.”

그날부터 기사를 쓰려고 병원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그런데 A씨와 홍균 씨 아버지의 말이 계속 번갈아 떠올랐다. 두 사람은 똑같이 “홍균 씨는 짓값을 치렀다”고 했다. ‘짓값’이 재판부가 정한 2년 6개월의 옥살이를 뜻한다면, 이 말은 사실이다.

‘정말 기사를 써도 될까.’ 혼란스러웠다. ‘기사가 나가면 홍균 씨는 어떻게 될까.’ ‘피해자가 또 상처를 받진 않을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만약 홍균 씨 아버지와 통화하지 않았더라면, A씨에게 홍균 씨의 근황만 듣고 자리를 떴더라면, 난 어떻게 했을까. 아마 기사를 썼을 것이다. 기사를 위해 휴일도 반납하며 취재를 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살짝 억울한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결국 노트북을 덮었다. ‘취재를 너무 열심히 하면 기사를 못 쓴다’는

말이 실감 났다. 물론 논리로 무장한 양측의 입장이 부딪혀서 그런 건 아니었다. 문제는 내 마음가짐이었다.

나중에 취재과정을 오롯이 회사에 보고했다. 팀장은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기사를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돌이켜보면 그 말을 꺼낼 때도 확신이 없었던 것 같다. 상당한 질책이 쏟아졌다. “실컷 취재해서 단독을 잡아놓고 뭐 하는 짓이냐”는 것이었다. 나중엔 타사 보도로 ‘물’까지 먹은 셈이 됐다.

성범죄 전과자의 의사 면허 취득은 분명 사회적 문제다. 의사는 환자의 신체를 직접 대하는 직업인 만큼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면허 취득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그 수는 2017년 137명으로 2008년(44명)에 비해 3배 늘었다. 이런 현상을 공론화시켜 법의 개선을 꾀하는 게 기자의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그 역할을 이행했을 때 공익은 향상된다고 본다.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나는 펜을 꺾음으로써 공익을 저버린 것이다. 가끔 2015년 겨울로 돌아가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고민하곤 한다. 하지만 여전히 답을 찾진 못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최근 관련 기사를 다시 찾아봤다. 홍균 씨가 올해 이번이 없는 한 의사 면허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가 부디 올바른 의료인이 되길 바랄 뿐이다. 🙏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등록된 충남 논산 박홍균 씨 집 전경. 2015년 12월 27일 찾아갔다. © 공성윤

